

<운전중 금지 사항> 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!



<운전중 금지 사항>에는 운전 중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 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. <운전중 금지 사항> 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.



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<운전중 금지 사항> 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강한 벌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.

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 (통화 · 화면주시) 하다 단순 적발된 경우

개정 전

벌칙	5만엔 이하의 벌금
범칙금	대형차 7,000엔
	보통차 6,000엔
	2륜차 6,000엔
	원동기장착차 5,000엔
점수	1 점

개정 후

벌칙	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
범칙금	대형차 25,000엔
	보통차 18,000엔
	2륜차 15,000엔
	원동기장착차 12,000엔
점수	3 점

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위험한 상황을 촉발한 경우

개정 전

벌칙	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
범칙금	대형차 12,000엔
	보통차 9,000엔
	2륜차 7,000엔
	원동기장착차 6,000엔
점수	2 점

개정 후

벌칙	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
범칙금	대형차 25,000엔
	보통차 18,000엔
	2륜차 15,000엔
	원동기장착차 12,000엔
점수	6 점 (면허정지)



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!